

Nov 2023. Issue 180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궤도수정**

생각과 현실

06 ... **해외시장진출 및 제조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연간 교육
진행계획**

최신 관세 판례 분석

09 ...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논리로 푸는 HS 사례

12 ... **3D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5 ... **베트남 내국 수출입(On-spot Im/Export)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9 ... **확정가격신고 이후 수입 신고 정정 실무**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2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궤도수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의미있는 목적을 향한 목표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2011년 11월 26일 NASA에 의해 발사된 MSL (Mars Science Laboratory)*은 이듬해 8월 6일에 목표지점인 화성의 게일 분화구에 탐사선 Curiosity를 정확히 착륙시켰습니다. MSL의 목적은 화성의 기후와 지질에 대한 연구 및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 조사를 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게일 분화구의 정확한 목표지점에 착륙해야 중요한 목적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전하는 화성과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SL은 두번의 궤도수정을 하였습니다. 우주에서 567,000,000KM를 날아 화성에 도달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점검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해외시장진출 및 제조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24년 연간 교육 진행계획’**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3D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베트남 내국 수출입(On-spot Im/Export)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확정가격신고 이후 수입 신고 정정 실무’**,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입니다.

연탄 하나의 무게는 3.65kg입니다. 어깨에 맨 지게에 하나, 둘, 셋... 묵직한 연탄이 쌓여집니다. 지게 끈을 움켜잡고 울퉁불퉁 흙 길을 걸어갑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줄지어 나아갑니다. 지게위에 놓여진 연탄들을 무사히 목적지까지 갖고 가는 임무입니다. 걸어가는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4,000장의 연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장애물을 피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덩치만한 지게를 걸치고 등뒤의 연탄이 떨어질까 조심스레 걷는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추운 겨울을 녹여줄 따뜻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는 11년째 해마다 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 지역에 진출한 한 중견 기업이 개최하는 **'한국전쟁 참전 미군용사 위문행사'**** 입니다. "한국전쟁에서 피를 흘린 참전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얻은 이익은 가급적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몇 분 남지 않은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사업을 일으켜 세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興業普世(흥업보세)는 많은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10년이상 꾸준히 실행되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0년여 세월 강산이 변하고 여러 상황이 발생해도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 가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의미있는 목적을 향한 목표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살펴보고 궤도를 수정하더라도 가야합니다. 무거운 연탄을 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가야하고 먼 타국의 노 병사들에게도 가야합니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찾고, 나의 역량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나와 타인의 행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의 말씀대로 **"누군가가 나로 인해 고통 하나를 가라 앉힐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손톱만큼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진정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If I can...)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해서 떨어지는 울새 한마리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Emily Dickins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If I can ease
on life the aching,
Or cool one pain,
Or help one fainting robin
Unto his nest again,
I shall not live in vain.

오늘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향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https://en.wikipedia.org/wiki/Mars_Science_Laboratory

** [서중호 아진산업 회장의 '흥업보세\(興業報世\)'...11년간 이어온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위문'. \(2023.07.13\). 뉴스퀘스트 \(newsquest.co.kr\). 2023.11.25.](#)

*** 장영희"나 때문에 이 세상이 손톱만큼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2019.05.13). 카톨릭 일꾼. 2023.11.25
<http://www.catholicworker.kr/news/articleView.html?idxno=2793>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해외시장진출 및 제조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연간 교육 진행계획

21년과 22년은 코로나로 억눌렸던 세계경제가 일시적인 과수요로 인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호황이 지나가고, 수출중심경제의 한국은 23년도 주변국의 경기침체와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전쟁, 수출통제 등이 뒤엉켜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속의 인플레이션현상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위해 금주를 시도해도 금방 술을 끊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듯이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을 회복되는 데에는 앞으로도 수십 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당분간 물가수준이 낮아지지 않는 상태, 소비감소와 실업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영 진

전무/관세사

wedi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분야는 원재료와 제품공급 위한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과 공장신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K-문화를 앞세운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의 한국산 소비재 상품은 동남아, 인도, 동유럽, 미국과 남미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확보한 중동국가로의 조선,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젠가 다시 경기가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생산기지구축과 시장진출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진출하는 지역과 국가는 다르지만 수출입교역과정에 관세와 연관되는 국제조세와 내국세를 절감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와 무역제도, 각종 감면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밀한 업무프로세스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설계해야 합니다.

IRA법으로 인해 미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려는 우리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장설비의 미국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율을 검토하고 수출프로세스를 재설계하여 수백만달러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한관세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유럽과 중국에 법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1년간 연중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출입기업과 함께 글로벌 국가로의 생산기기 구축과 시장진출에 필요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시장진출을 검토하는 실무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교육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연초에 기업에서 진행하는 워크숍 일정에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할 경우 더 보람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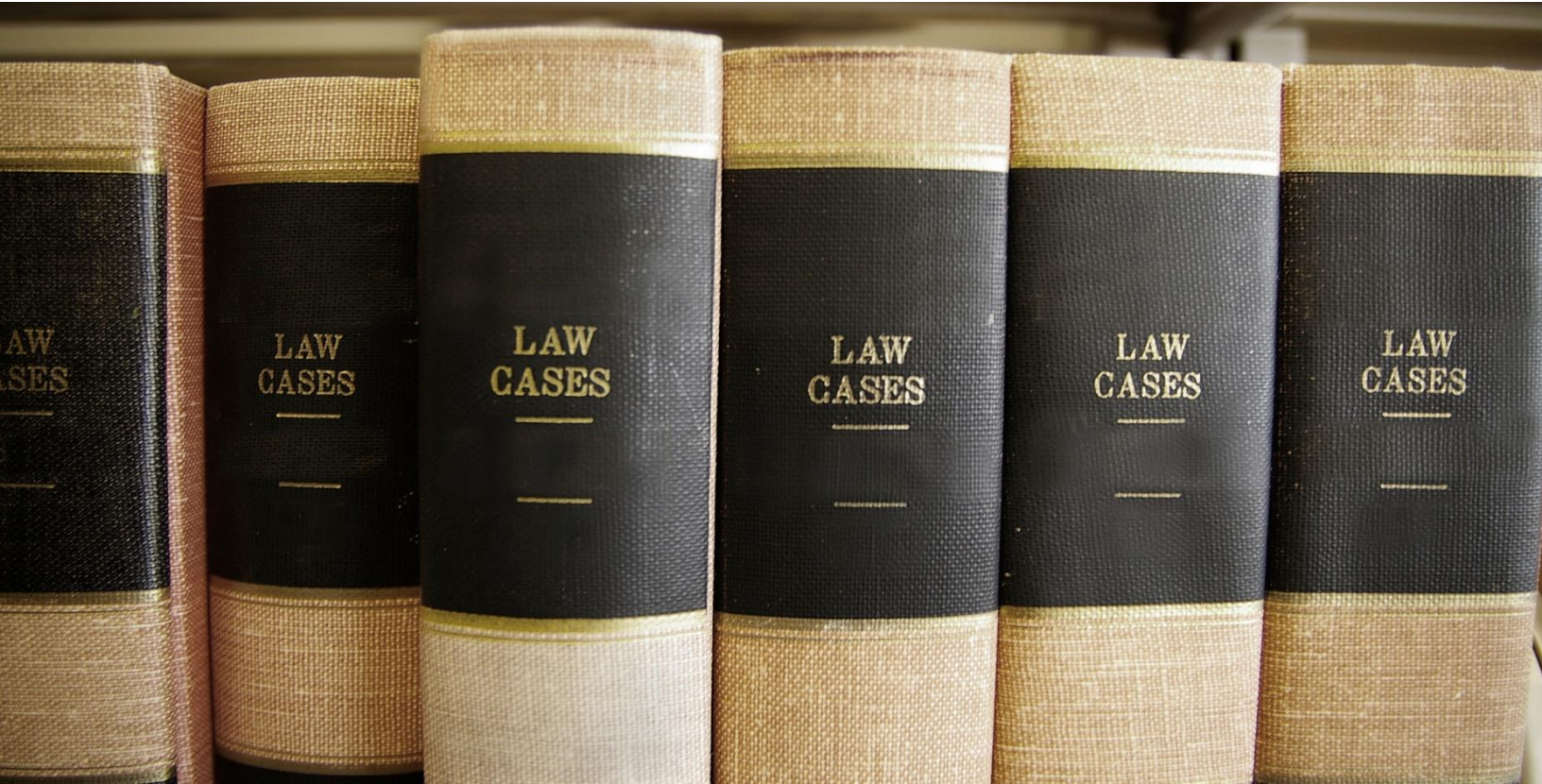
1. 사후심사 추정 RISK를 예방하기 위한 관세 이전가격과 로열티 등 수출입가격정책의 수립
2. 미중보복관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에 대응하는 방안
3.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당면하는 HS 품목분류와 관세율에 대한 검토
4.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사항과 23년 개정내용, 세부적인 외환검사 대비방법
5. 수출입시장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6. 26년시행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24년 1월말에 제출하는 탄소배출량 보고제도 준비사항
7. 수출과 수입통관시 기업담당자의 업무감축과 보고서 작성의 편의성 제고방안
8. 수출입안전준수기업(AEO)의 공인기준에 신규로 포함된 ESG 진단항목에 대한 설명과 준비방법
9. 수출물품의 적정한 관세환급세액 결정하기 위한 로직 및 공식 재설계
10. 관세청 ACVA와 국세청 APA 제도의 비교와 ACVA 신청준비 방법
11. 한국이 체결한 여러 FTA국가와의 특혜세율 적용과 원산지검증에 대응하는 방법

○ 교육비용 협의 및 일정은 4주 이내 실시

교육프로그램중에서 2~3개 정도를 선택하고, 4주이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은 별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 교육시간은 2시간 30분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은 1시간 30분, 상담 및 업무협의를 1시간 정도로 진행하여 수출입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합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18.1.30.부터 2022.6.24.까지 000에 소재한 000(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000(화학반응 용기 000 등 2종,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26.90-9000호(WTO 협정세율 6.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20.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27.90-9099호(양허관세율 0%)의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심은영

관세사

eysh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쟁점사항]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 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 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기기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분석대상물질을 용기에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1회용 소모성 의료용 용기로서 용기 상단 부분에 측정 장비의 정확한 감지 기능을 위해 링형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눈금이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바닥면은 불순물 등의 제거를 용이하도록 특정 각도로 가공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해외분류사례를 보면, 000 세관에서는 BBB에 따라 면역분석 기술을 통해 수행되는 반응 인서트는 기본적으로 특수모양의 플라스틱 큐벳(40x6x10mm)으로 구성되며 하단에 모따기가 있는 평평한 양면을 가진 광도분석기용 부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9027.20호 내지 제9027.80호로 인식되는 검사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DEBTI 35280/18-1, 2018.12.11.**)하였다.

또한, 다른 해외분류사례에서, 000 세관은 000 제품인 쿨터 액세스 면역화학 기기 모델 2, 000에만 전용되도록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링을 형성하고 있는 특정 모양으로 제작된 반응 용기(RV)에 대하여 면역분석 기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용기로 보아 제9027.90호로 분류(N246874, 2013.10.29.)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에 장착되어 분석대상물질의 수용 및 이동의 용도로 사용될 뿐, 쟁점물품이 분석기기 자체를 구성하거나 그 기능에 필수불가결하다거나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석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은 도구로 볼 수 있는데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도구를 제9027호에서 도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27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39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1)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었고, 2)AAA사의 면역분석 장비000에만 전용 사용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분석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3)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분석기기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부속품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제9027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3926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물품은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도록 특수한 재질과 형상으로 제작되어 그 특정 분석기기에만 전용되는 것이므로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한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3D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1. 개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플라스틱 액체를 굳혀 입체 물품을 만들어 내는 프린터를 처음 개발한 이후로 플라스틱, 종이, 고무, 콘크리트, 식품, 금속 등 점점 재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조형물 출력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의 정의는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성곤

지사장/관세사
skso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대부분 3D CAD, 3D 모델링 프로그램 등으로 3D 도면을 제작하는 모델링(modeling), 제작된 도면으로 물체를 만드는 프린팅(printing), 제작물에 대한 표면 연마, 부분 제작물을 조립 또는 채색하는 피니싱(finishing)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3D 프린터의 등장과 시대의 흐름별로 기능 및 창작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HS CODE 분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번 논리로 푸는 HS 사례에서는 3D 프린터의 2022년 HS 개정 특징을 통해 HS 분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 품목분류의 검토

2D 프린터가 컴퓨터를 이용해 활자가 그림을 종이에 인쇄한다면 "3D 프린터"는 컴퓨터를 이용해 3차원의 도면 데이터를 입력하여 다양한 재료로 입체적인 대상을 만들어 내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보면 소형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모델화하고 모델화한 데이터를 수많은 단면으로 분할하여 가장 밑바닥의 단면(layer)부터 한 층씩 쌓아 올려 완성해갑니다. 현행 분류 체계 하에서 3D 프린터는 특계 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제8463호(금속), 제8475호(유리), 제8477호(고무나 플라스틱) 등 재질에 따른 가공 기계에 각각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신상품 등장의 추세를 반영하여 하나의 호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HS 2022 개정 시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유보되어 있던 제8485호에 "적층제조기계(Machines for additive manufacturing)"라는 용어로 신설되며, 제84류 주 제10호에 "적층제조기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3. 3D 프린터의 품목분류

22년 개정 HS에서 제8485호에서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기계를 분류하는데, 적층 제조는 디지털 모델(digital model)을 바탕으로 물리적 대상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이 기계는 기계에 제공되는 디자인 파일(design file)을 기초로 하여 재료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대상을 창출합니다. 이 기계는 에너지 원(source)

[예: 레이저, 저항기(resistor), 전자 빔(electron beam)이나 자외선]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금속,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터, 시멘트, 세라믹, 유리, 나무, 종이나 종자 셀(seed cell)과 같은 재료로부터 3차원의 목적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형태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이러한 양식으로 의료 장치, 인공장기(prosthetics), 예술품, 화기(firearm), 건축물과 그 부분품, 의복과 부분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목적물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호는 투입되는 재료에 따라 금속용(제8485.10호), 플라스틱과 고무용(제8485.20),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유리용(제8485.30호), 기타(제8485.80호), 부분품(제8485.90호)로 세분류되며, 우리나라 10단위 코드(HSK)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8485.20호 이하에만 “데스크탑 형태의 재료압출방식”의 것을 세분류 하였습니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제84류 주10 신설 <신설>	10. 제8485호에서 “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 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5호에 분류한다.
<신설>	84.85 - 적층제조 기계 8485.10 - 금속용 8485.20 - 플라스틱 · 고무용 8485.30 - 플라스터 · 시멘트 · 세라믹 · 유리용 8485.80 - 기타 8485.90 - 부분품



Global Customs Insight

베트남 내국 수출입(On-spot Im/Export) 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2023년 베트남의 관세, 통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주목되었다고 집어 볼 수 있는 사안은 베트남 내국 수출입(On-spot Im/Export)제도의 개정 예고와 관련된 사안 이였습니다. 연말에 접어들면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베트남 관세 당국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 9월 제출된 베트남 재무부(MOF)의 08/2015/ND-CP 시행령 개정 초안"과 그 의견을 기초로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정이 예상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초안에서 베트남 재무부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 현행 내국 수출입 현황, 그 동안의 내국 수출입 제도시행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하며, 내국수출입 규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이 현행 내국수출입 규정(08/2015/ND-CP 35조 1항)을 폐기하는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신 중 호

법인장/관세사
jhshin@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 a. 가공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이 유형은 가공활동에 대해 이미 상법(181 조, 182 조), 시행령 69/2018/ND-CP(42 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b. 국내 기업과 EPE 또는 비관세 지역의 기업 간의 거래계약에 따른 물품
→ 이 유형은 EPE, 비관세구역 및 기타 주체와의 관계에 대해 베트남 상법(28 조), 대외 무역관리법(3 조), 관세법(4 조), 35/2022/ND-CP(26 조) 등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어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적용될 수 있음
-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자가 없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거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또는 수령되는 물품
→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에 c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 35 조가 폐지되면 c항은 완전 폐지

더불어, 재무부는 해당 규정 폐지 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1) 거래 물품이 국내산인 경우
 - 국내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납부
 - 2) 수출용 제조를 위해 수입된 면세자재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 제조자는 보세 창고, EPZ, EPE, 기타 비관세구역 등으로 제품을 수출
 - 베트남의 물품 수령인은 해외 수입과 동일하게 보세 창고, EPZ, EPE, 기타 비관세구역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 세금 정책은 CD 유형에 따라 상이
 - 3) Non-EPE 인 경우 EPE 로의 전환 고려
 - EPE 와 Non-EPE 간의 거래는 수출입으로 보아 외국의 제 3 자가 거래에 참여하더라도 내 국수출입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업이 위의 3 가지 안을 원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상품 생산에 사용한 면세 자재의 용도변경을 하고 모든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그 후에는 국내 거래로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FCT 등의 세금을 납부 가능

한편, 재무부는 규정 폐지 직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 년 동안 내국수출입 제 35 조 1 항 c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자가 없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거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또는 수령되는 물품”은 다음을 조건으로 이 조항 폐지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내국수출입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조건) 대외 무역 관리법 제 3 조 5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대표자(Representative)를 두어서는 안됨**

한편, 현재 베트남 현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내국수출입제도 B 항에도 해당하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C 항에도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 일부 베트남 지역세관에서 C 항에 해당하는 거래로 간주하여 벌써부터 내국수출입 신고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법령을 해석할 때, 특정 조항(Article)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Clause)은 독립적인 관계(또는 열거 관계)이지, 필요 충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거래가 2 개 조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설사 다른 한 개 조항(C 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항(B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승인이 가능한 거래로 해석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를 폐지 예정인 조항과 결부시켜 신고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실제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실제적으로 향후 내국수출입제도 C 조항이 실제 폐지된다고 볼 때,

- 1) C 조항의 폐지의 목적을 “해당 내국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간(3 개 주체)이 서로 본점 - 지점간 거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진행 가능”으로 해석하는 경우,
 → 이 의도라면, “베트남내 거래 당사자 ①” - “해외거래당사자” - “베트남내 거래 당사자 ②”, 이렇게 3 거래 당사자가 모두 독립된 거래당사자인 경우(3 당사자중 본-지점 관계로 연결되는 관계없어야 함)에는 C 조항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1 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하지만, C 조항의 폐지의 목적이 “외국기업으로서, 베트남에 대표자(Representative)를 두고 있는 기업이 거래당사자이면서, 베트남 내에서 화물이 운송되는 형태의 거래”는 내국수출입 제도 적용이 원천 불가 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
 → “베트남내 거래 당사자 ①” - “해외거래당사자” - “베트남내 거래 당사자 ②”, 해당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3 자간 관계가 아니더라도, 3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기업이라도 베트남에 대표자(사무소, 지점, 법인 등)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 수출입 거래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1)안을 기반으로 한 의견과 2)안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2)안의 취지가 재무부의 결론이라고 상정한다면, 접근가능한 방안은 3 자간의 거래를 보세창고라는 중간 기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2 개의 독립된 거래로 분할하는 방안이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검토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내 거래당사자 ① - 해외거래 당사자간 : 보세창고로의 수출 (단, 해외거래당사자가 창고를 수배, 운영)
- 해외거래 당사자 - 베트남내 거래당사자② 동시에 베트남내 최종 물품 도착기업 : 보세창고로부터의 수입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의 개정(C 항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현재시점(2023년 11월 중순)까지도 확정된 의견이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확정된 안과 그에 대한 시행 시점이 공표된다면 즉각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확정가격신고 이후 수입 신고 정정 실무

수입실무 중 신고내용의 수정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보정신고를 하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는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된 경우는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가격신고 승인 이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을 세액 정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실무적으로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오규태

지사장/관세사
ktoh@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1.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산일은 시행령 제6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12. 2. 2.>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관세법 시행령 제6조 5호에 따라 기산일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변경되므로 확정가격 신고 이후 세액정정처리하는 확정가격신고 이후의 세액정정은 확정가격 신고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는 보정신고를 하고 6개월이 초과 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확정가격신고 세액 수정신고 유의사항

확정가격신고 이후 세액에 대한 수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고오류 코드로 정정을 접수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사항이 정정사항에 반영되기 어렵다. 가령 2021년 7월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2023년 6월에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수정신고까지 완료되었으나 확정가격신고 사항에 대한 세액을 2023년 10월에

정정하게 된다면 수입신고 시점으로 계산을 한다면 일반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하지만 기산일을 확정가격신고로 한다면 보정을 통해 정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실무적으로 정정 진행 시 32번 가격신고 관련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으로 접수하면 앞에서 예를 든 사례 같은 경우 보정을 통해 정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구분 / 정정사유					
납세정정	A	[0:세액정정, A:보정, B:수정, C:경정, X:해당없음]			
신고정정	D	[0:신고정정, X:해당없음]			
관세가산구분			관세가산세감면	[V:경감적용, N:해당없음]	가산세경감을
내국세가산구분			내국세가산세율	0	수정가산세율
정정코드	32	확정가격신고후 세	추가납부사유		환급동시신청
귀책사유코드	99	기타사유			신청구분
					AD
					환급신청번호
신청자 /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일	2023-11-08	정정차수	1	신고세관-과	020 75
신청인	신한관세법인-인천공항지사		오규태	신청자구분	01 [01:관세사, 05:화주]
				수입신고일	2021-10-13

신고세액 정정시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확정가격신고 관련 사항의 정정이 발생했다면 위에서 제시한 코드를 이용하여 정정으로 인한 가산세나 보정 이자를 줄일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내용

(1)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제19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p>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p> <p>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 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⑤·⑥ (생략)</p>	<p>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 <u>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u></p> <p>⑤·⑥ (현행과 같음)</p>



한 윤 호

관세사

yhha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별표 1] 제11호 전면 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 기자재에 대해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함.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 총8종 - 레이저용접기 및 커팅기, 두피 LED 헬멧, 손톱경화기, 터프팅건, 열풍수축기, 자동캔시머, 레이저각인기, 레이저마킹코딩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자재, 총2종 - 전기방향탈취기(직류전원), 직류입출력 파워뱅크

2. 시행일자

미정(행정예고)

3. 개정에 대한 의견

현재, 전파법 요건 대상 기자재에 해당된다면 재수출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해당 고시 내용에 따라 요건면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의 시행령 조항이 신설 예고되면서, 개인이 사용하는 기자재 등과 더불어 관세법 재수출면제 97조 재수출면세를 적용받는 대상 기자재는 요건면제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후 용도 외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시 별표1 제11호에 소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대상기자재 종류를 명확히 나열하여 구분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